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연결전 연결연도소득 계산	①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				
	소득조정 금액	② 익 금 산 입			
		③ 손 금 산 입			
	④ 차 가 감	소득금액 (①+②-③)			
	⑤ 기부금	손금산입 한도초과액			
	⑥ 기부금	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 액 손 금 산 입			
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	(④+⑤-⑥)			
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연결 제거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	익금불산입			
	⑨ 기업업무추진비	손금불산입액	손금산입		
	⑩ 기부금	손금불산입액	손금산입		
	⑪ 기 부 금	손 금 산 입 한 도 초 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		
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	⑫ 차 가 감 계 (⑦+ ⑧- ⑨- ⑩+ ⑪)				
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	상당액	익금불산입		
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	상당액	손금불산입		
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	손금불산입한	대손충당금 상당액		
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	충당금 상당액	손금불산입		
	⑯ 연결법인간 자산	⑮익 금 불 산 입			
	⑰ 연결법인간 자산	⑮익 금 산 입			
연결조정항목의 배분액	⑱ 차 가 감	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(⑯+⑰+⑱-⑲)]			
	⑲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	익금불산입액			
	⑳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	손금불산입			
	㉑ 기부금	조정전 연결소득금액	(㉒-㉓+㉔)		
	㉒ 연결법인의 기부금	손금불산입			
	㉓ 연결법인의 기부금	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	손 금 산 입		
	㉔ 연결수정 소득금액	(㉕+㉖-㉗)			
연출세액의 개별귀속 및	㉕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	처분손실손금불산입			
	㉖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	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㉕+㉖)			
	㉗ 연결 소득 개별 귀속액	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
	㉘ 연결 이월 결 손 금 공 제				
	㉙ 비 과 세 소 득				
	㉚ 소 득 공 제 액				
	㉛ 과 세 표 준 개 별 귀 속 액	(㉜-㉝-㉞-㉟)			
납부할 세액 계산	㉜ 연 결 세 율				
	㉝ 연 결 법 인 별 산 출 세 액				
	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
	㉟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
	㊱ 가 산 세 액				
	㊲ 가	감 계 (㉜-㉝-㉞+㉟)			
	기 납 부 세 액	㊳ 중 간 예 납 세 액			
		㊴ 원 천 납 부 세 액			
		㊵ () 세 액			
		㊶ 소 계 (㊳+㊴+㊵)			
㊷ 신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					
㊸ 합 계 (㊶+㊷)					
㊹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				
㊺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㊸-㊹)				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	양 차 도 익	㊻ 등 기 자 산			
		㊼ 미 등 기 자 산			
	㊽ 비 과 세 소 득				
	㊾ 과 세 표 준	(㊽+㊼-㊽)			
	㊿ 세 율				
	㋀ 산 출 세 액				
	㋁ 감 면 세 액				
	㋂ 공 제 세 액				
	㋃ 가 산 세 액				
	㋄ 가	감 계 (㋃-㋄-㋅+㋆)			
㋅ 기 납 부 세 액					
㋆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㋄-㋅)					
미 환 류 소득 법인 세	㋇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
	㋈ 세 율				
	㋉ 산 출 세 액				
	㋊ 가 산 세 액				
	㋋ 이 자 상 당 액				
	㋌ 납부할세액(㋊+㋋+㋌)				
㋍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(㋆+㋌+㋍)					
㋎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
㋏ 납 부 (환 금) 할 세 액 (㋍-㋎)				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1.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㉔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2. ㉕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㉕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3. ㉖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